

한국에서의 종자병검정의 현황과 그 대책

숙련요원 및 장비부족, 기술투자 선행절실

鄭厚燮(서울대학교 농과대학)
趙南吉(국립 식물검역소)

1. 한국에서의 종자병검정에 대한 역사는 오래되지 아니하나 식용작물 종자는 주요 농작물 종자법령에 의거, 채소종자는 종묘관리법령에 의거, 수출입 농립산종자는 식물방역법령에 의거 각 기관이 종자검사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.

2. 식용작물에 대한 종자검사는 국립 농산물검사소에서, 채소종자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, 수출입 농립산종자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.

3. 종자검사는 훈련된 요원에 의한 실험 및 검사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정밀검사가 실시되어야 하나 우리의 현실은 훈련된 요원 및 실험장비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.

4. 농업생산에 있어 종자의 중요성을 인식할때 우선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주요 종자전염병

균 및 대상종자 등을 제조사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수입금지 대상종자및 금지지역등을 명시한 관계법령을 재보완하여야 하고 검역방법을 구체화 과학화하여야 한다.

5. 식량작물종자, 원원종(原原種), 원종, 보급종 등에 대한 검사기준에서 주요병원균에 대한 검사항목기준치는 가급적 0%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6. 금후 식용작물종자 보급종에 대한 검사는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국립종자공급소가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될 것이다.

7. 검사요원에 대하여는 해외연수, 국내대학, 농촌진흥청, 농업기술연구소에서 일정기간의 검사방법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험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.